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2020.11.10.)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0
4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	23
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29
6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6
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	43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 7. 2. 시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율성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서 위임조례, 자치조례의 내용을 함께 규정(안 제1조)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종이형 권면금액, 상품권 기재사항 정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을 정함
- 판매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서 내용
 -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공개
 - 가맹점 제한 업종, 가맹점 자격 요건
- 상품권 잔액환급 비율 정함(안 제8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 정함(안 제9조)
- 상품권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 ~ 제4조는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7조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는 상품권 잔액환급 비율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는 상품권 업무의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판매 대행점 정보 공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제출,
가맹점 등록 및 거부사유, 가맹점의 자격 요건,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0원권
2. 10,000원권

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판매, 할인 수수료 등

나. 관련조문

- 1)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 2)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등)
- 3)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496	145	145	145	145	1,076

3. 관련 의견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0년 예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수수료 등 496백만원

2. 2021년도 이후 예산

가. 상품권 할인 판매지원: 90,000천원

나. 판매 · 환전 수수료: 15,000천원

다. 상품권 제작 및 홍보비용: 26,500천원

라. 시스템 유지 · 관리: 13,500천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현행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만 한정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을 정함
(안 제7조~제9조)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함
(안 제11조 ~ 제17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함
(안 제18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
 - 안 제4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 안 제6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7조 ~ 제9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
 - 안 제11조 ~ 제17조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18조 ~ 제19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9조(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하 “사회적 가치”라 한다)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 등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협력 지원

-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②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38	60	60	60	60	278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및 판로 확대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0년 예산: 교육 및 홍보비 38백만원

2. 2021년 이후 예산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20백만원(5년 단위)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훈련: 20백만원

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판로 확대사업: 20백만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가. 출연이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25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250	250	250	-	-	250	-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다. 부서 의견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이 올해와 같은 200억 원이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동일하게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추후 출연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목표액 확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 타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15.8%, 경남도 28.7%, 시·군 6.3%, 금융기관 45.7%, 기업체 등이 3.5%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재단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0. 20, 박수자 의원 등 11명
- 나. 회부일자 : 2020. 10. 27.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수자 의원]

가. 제안이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산림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함(안 제3조)
-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임업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 제4조는 기본방침 및 군수의 책무
- 안 제5조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공유림 관리를 사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산림자원 소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산양삼 재배자 교육,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체험행사 · 전국대회 행사 참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음.

-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이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나. 체험행사
 -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가. 출연이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1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1년	18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다. 부서의견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8년도부터는 1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인원현황 ('20.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20.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감사	최○○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323 (자산 총액)
	예산액 ²⁾	487	655	735		부채	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180	180		자본 ¹⁾	31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74			250		124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장품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가. 제안이유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

○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업무를 정함(안 제2조)

- 설치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업무: 약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 및 판매, 홍보 등

○ 약초유통센터 위탁 및 이용료(안 제3조)

- 근거: 법 제51조제2항·제3항
- 생산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 안 제2조는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 안 제3조는 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에 따라 목과류: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로 하고 있음.

-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기존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 창고, 전처리(前處理)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약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및 판매
2.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유지비

나. 관련 조문: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78	70	70	70	70	358

3. 관련 의견

거창군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약초유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20백만원

나.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50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가. 제안이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8조)
-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거창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 ~ 제5조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 안 제6조 ~ 제7조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실태조사
- 안 제8조는 재정지원
- 안 제9조 ~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8조(재정지원)에서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 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
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사회적 기업 대표
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1.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여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마련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설정 등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

-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안 제15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간 등 마련(안 제28조제2항~제4항)
 -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6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
- 사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29조)
- 소멸시효를 정함(안 제30조)
 -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 과오납 사용료등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및 신설(안 별표 7)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 안 제15조, 제26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감면
 - 안 제28조 ~ 제29조는 이의신청 및 가산금
 - 안 제30조는 소멸시효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2항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0조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의 경우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과오납 사용료 등의 채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주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 해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

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u>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u></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u></p> <p>②~③ (생략)</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u>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u>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u>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u>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u></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u>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u>공공하수도 사용료를</u>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u>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u>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u>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u>해야 한다.</p> <p>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p>

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 설>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삭 제>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p> <p>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의 보훈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p>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p>
<p>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p> <p>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p>	<p>100퍼센트</p>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아.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소재 사업장	5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비고

1. 가목에서 **사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아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자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